

[학교법인국제대학교 법인회계-일반.수익]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장 귀하
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국제대학교의 2011회계연도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2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/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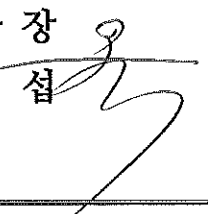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국제대학교의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국제대학교의 2012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■ 다음 :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재산의 수익증대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2011년 4월 23일

학교법인국제대학교 감사 박 성 배 

감사 조 창 영 

피 감사자 (입회인) 직명 사무국장
성명 조 규 섭 

[국제대학교 교비회계-등록금.기금]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제대학교의 2012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/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국제대학교의 2012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2년 4월 23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 감사 박 성 배 

감사 조 창 영 

피 감사자 (입회인) 직명 사무처장
성명 서 수 철 